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협약기간(5년)이 2020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구미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재산현황

- 1) 시 설 명 :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2)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36-28(오로리)
- 3) 시설규모
 - 대지면적 : 5,831.4m²
 - 건축면적 : 202.1m²
 - 연 면 적 : 342.1m²

4) 시설용량 : 540m³/일

5) 설 치 비 : 4,058백만원

- 초기시설 : 409백만원 / 총인처리 및 자외선소독 : 637백만원 /
고도처리시설 : 3,012백만원

6) 처리방법 : 전처리(가압부상법) + BIO-SAC(고도처리) + 총인처리
(가압부상법) + 자외선소독

7) 준공일(당초) : 1990년 10월

8) 주요시설 : 건물 및 시설물, 기계·전기부대시설, 실험기자재 등

나. 위탁기간 : 2021년~2025년(5년)

다. 위탁방법 : 위·수탁 협약체결에 의함

라. 위탁운영비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위탁운영비	398,167	410,113	422,417	435,090	448,143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

※ 1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 반영

※ 산출기준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23.)

마. 위탁사무 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반입되는 오·폐수 계량관리·자료관리·적정처리
-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산정·부과 위한 자료 제공
- 방류수 수질 자가검사
-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은,
 -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1996년부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
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 시 산하 공공기관인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할 경우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운영의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